



# 學校圖書館의 三要素

實效 있는 學校圖書館 設置基準令의  
制定을 促求한다

金 斗 弘

## 序 言

우리 文教部는 4292年 4月 1日 訓令 82號에 依하여 「師範學校 및 中高等學校 施設基準令」을 公布하였다.

學校司書들이 本令에 關心을 두는 까닭은 그 7條에 學校圖書館의 基準이 提示되어 있기 때문이다. 學校圖書館에 關하여 우리 政府가 法令을 制定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요, 當局이 學校圖書館의 重要性을 認識하게 된 證據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그 意義가 적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 内容을 조금만 檢討하여 보면, 도무지 實效없는 눈가림에 不過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本令 第 7條는 다음과 같다.

「각 학교에는 3학급까지는 300권 이상의 도서를 비치하여야 하고, 3학급을 초과한 때는 그 초과하는 3학급마다 200권 이상 책을 가산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本令의 草案者가 學校圖書館의 初步 조차 理解하지 못하는 人士가 아니었던가 싶다. 7條의 内容을 보면, 무슨 책만있으면, 圖書館(圖書室)이 될 수 있다는 印象

을 주기 때문이다. 小說책이나 雜誌 나부랑이를 모아서 基準數量을 채워 두었다고 하여도, 本令으로서는 조금도 나무랄 수 없지 않은가, 이와 같이 本令은 集書構成의 問題를 完全히 無視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本令의 缺陷은 이에서 끝이지 않는다. 아무리 훌륭한 책을 모아 두었다고 하여도, 아무리 均衡 잡힌 集書構成이 되어 있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써 圖書館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책(圖書館資料)이 있으면 그것을 整理하고 運用할 사람(圖書館職員)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保管하고 利用할 장소(圖書館施設)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圖書館資料, 圖書館職員 圖書館施設을 우리는 圖書館의 三要素라고 부른다. 이 三者에 圖書館을 構成하는 基本條件이므로 무릇 圖書館을 計劃하거나, 圖書館을 觀察하거나, 圖書館에 關한 法規를 制定하거나 할 경우에 어느 한 가지도 제쳐 놓을 수는 없는 것이다.

以下 筆者は 圖書館의 三要素에 關하여 그 根本的 性格을 幣印으로써, 將次 圖書館 基準令을 草案하게 될 當局者的 의 參考에 資料자 한다.

## 學校圖書館 資料

學校圖書館의 資料는 먼저 學校教育의一般的 的 目的에 符合되는 것이라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그것은 學生들의 學習活動에 有益하고, 그들의 教養을 높이는데 有益하고, 그들의 健全한 娛樂(레크리에이션)에 有益한 것이라야 한다.

學校圖書館의 資料는 다시 그 學校 特有的 教育目的에 符合되는 것이라야 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各學校 圖書館의 集書構成에 있어서는 初等學校의 境遇와 中等學校의 境遇, 男學校의 境遇와 女學校의 境遇 그리고 人文系 高等學校의 境遇와 實業系 高等學校의 境遇에 따라서 그 커리큐럼의 特殊性이 考慮되어야 하는 것이다.

以上의 原則을 實現시키기 爲하여 우리는 主類別 標準集書構成 比率를 定하여야 한다. 先進諸國의 例를 따르되 우리의 實情이 反映되어야 할 것이다.

司書教師는 資料의 選擇에 있어서 主動이 되어야 하지만 各教師와 學生에게서 希望과 意見를 求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司書의 獨斷을 避하고, 全體教師와 學生의 協助를 얻는에 有益하기 때문이다.

學校圖書館은 圖書以外의 資料 即 非圖書資料를 疎忽히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學校圖書館用 適書가 不足함에 비추어, 農村學校의 邊境한 經濟事情에 비추어 그 重要性은 더욱 強調되고 있다. 非圖書資料中에는 돈을 많이 드려서 사야 하는 것도 있으나, 아주 월값으로 求할 수 있는 것과 教師·學生의 조그만한 수고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더욱 많다. 非圖書資料 中의 視聽覺資料 取扱에 關한 筆者의 見解各級學校(大學除外)는 原則적으로 「視

聽覺 센터」를 別途로 가져야 한다. 經濟事情이 許諾하지 않아서 本格的인 視聽覺 센터를 設置할 수 없는 學校에 있어서는各自便利한 方法을 講究할 일이다. 經濟力이 미치는 學校에 있어서 視聽覺資料를 學校圖書館이 管理한다는 것은 無益한 노릇이다. 「敎育에 있어서의 視聽覺的方法(Audia visual method in teaching)」이極히 重視되고 있음에 비추어, 各級學校는 모름지기 獨立된 視聽覺 센터를 設置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境遇, 學校圖書館은 베어티컬·파일링 할 수 있는 視聽覺資料만을 다루면 되는 것이다.

## 學校圖書館 職員

學校圖書館의 職員은 司書教師에 依하여 代表된다. 司書教師는 먼저 教師로서의 資格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圖書館人으로서의 資格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教師라고 하여 누구든지 司書教師가 될 수 없으며, 圖書館 專門技術을 가졌다 고 하여 누구든지 司書教師가 될 수 없다. 圖書館學(Library Science)은 하나의 獨立科學이기 때문에 常識의으로 다를 수 없는 까닭이며, 學校圖書館은 그 自體 目的이 아니고 敎育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한 하나의 手段인 까닭이다.

司書教師는 敎務部나 學生部나 其他 어느 部署에 屬하지 않고 學校長에게 直結되어야 하며, 다른 部署의 長과는 調整關係(Coordinative Relation)에 있어야 한다. 學校圖書館은 學校敎育의 學習指導 및 社會性 指導의 二大 目標를 具顯시키는 綜合的手段인 故로, 校務分掌上의 어떤 特定部署에 隸屬하여서는 아니된다.

우리는 圖書館에 對하여 敎育上의 큰效果를 期待한다. 이 期待가 成就되고 아니 되고는 司書教師의 活躍에 달렸으며,

그가 어느 程度 活躍하는가는 우리가 그를 어느 程度 活躍할 수 있게 하는가에 달린 것이다. 말하자면, 그가 圖書館을 돌볼 수 있는 充分한 時間의 餘裕를 가지고 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學科擔當時間을大幅的으로 줄여 주어야 하며, 圖書館業務以外의 校務를 全的으로 免해 주어야 할 것이다. 「 좋은 司書가 되려니 좋은 教師가 될 수 없고, 좋은 教師가 되려니 좋은 司書가 될 수 없다. 」는 司書教師의 苦衷을 真摯하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學校司書에 關한 限, 學科時間은 아주 막기 않는다는 것은 學生指導上 오히려 逆效果를 招來한다는 事實을 看過할 수는 없다. 學生들은 教室에 들어와서 自己네를 가르치는 先生이 아니면, 두려워하지도 않고, 尊敬하지도 않는다.

### 學校圖書館 施設

學校圖書館은 學校의 基本的 施設이다. 學校에서 教室을 만들어야 하는 것과 같이 圖書館을 만들어야 한다.

學校圖書館은 하나의 教室 하나의 實驗室에 連結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教室 모든 實驗室에 連結되는 너어보·센터의 구실을 한다. 따라서 그것은 學校構內의 閑寂한 자리에 위치할 것이 아니라, 教育活動의 中心地에 위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獨立建物일 必要是 없다. 大概의 境遇, 獨立建物은 利用者の 接近에 不便하다.

圖書館의 室內配置와 各備品은 機能의 이라야 한다. 모든 配置, 모든 備品 및 모든 치수(사이즈)에는 合當한 意味가 있

어야 한다. 備品의 規格과 形態는 國際的으로 大體의 標準이 있다.

採色, 換氣 및 照明에 留意하여야 하며, 여러 驚音의 根源을 멀리하여야 한다. 換氣와 照明은 常識的으로 處理될 수 있는 問題이리만, 採色은 專門家의 助言을 받아야 한다. 色彩調節(Colour conditioning)의 問題는 最近 하나의 應用科學的體系를 갖추기에 이르렀다.

### 結語

學校圖書館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無妨한 奢侈品의 存在가 아니며, 그것 없이는 現代教育이 不可能한 必需品의 存在이다. 그러므로 世界의 進步의 여려 國家에 있어서는 學校圖書館의 設置·運營에 關한 效果의 基準을 提示하고 있으며, 가까운 日本에 있어서는 「學校圖書館法」이라는 單獨法까지도 制定하고 있는 터이다. 우리는 남과 같이 單獨法을 가지기는 못하더라도, 實效있는 文教部令 한낱은 가져야 하겠다.

지난 四月以來, 우리 政府와 國民이 한결같이 國家의 現代化를 高唱하고 있음에 비추어, 文教當局者는 맡은 바 教育의 現代化를 為한 具體的인 方案을 樹立하여야 할 것이며, 그 가운데에는 學校圖書館의 現代化에 關한 事項이 반드시 包含되어야 할 것이다.

「學校圖書館을 가지지 않고 現代教育을 한다는 것은, 水泳場을 가지지 않고 水泳을 가르치려는 것과 다름 없다.」(三輪計雄  
學校圖書館)

<筆者·釜山學校圖書館協議會幹事長>